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3070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6543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재산세 40,389,310원(지방교육세 6,731,5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와 제1심의 증거관계(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신탁법 제46조 제1항에서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그 사유재산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적격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하기는 하나 그에 관한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⑵ 이 사건 처분은 C 주식회사에 관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다.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세 상당액만큼 수익권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경제적·사실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 또는 신탁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신탁법 제4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서 신탁사무처리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인 원고가 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처리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지방세 등의 부과 자체를 다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